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38
----------	-------------

제안년월일 : 2004년 4월 9일

제안자 :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김영기

1. 수정이유

- 일부 조문 중 뜻이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으며, 노인 복지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면제규정이 간결하지 못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4조중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종교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 안 제10조제2항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을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로 하며,
- 안 제11조 “(이용료 징수 및 면제)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회관 시설의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를 “(사용료) ①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타시설 아용에 따른 비용은 최소한의 실비 범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로 함.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중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종교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을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으로 한다.

안 제11조 “(이용료 징수 및 면제)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회관 시설의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를

“(사용료) ①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타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최소한의 실비 범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로 한다.

[별표]

노인복지회관 시설 사용료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대 강 당	오전	50,000 08시-12시	○ 토, 일, 공휴일, 야간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 포함)작업시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오후	60,000 13시-18시	
	야간	70,000 18시-22시	
	1 일	100,000	
소 강 당	오전	40,000 08시-12시	
	오후	50,000 13시-18시	
	야간	60,000 18시-22시	
	1 일	90,000	

2.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음향기기	1회 (2시간)	20,000원	○ 매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요액의 20퍼센트 초과율만 추가 징수

3. 냉·난방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대 강 당	1회 (2시간)	50,000원	○ 매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요액의 20퍼센트 초과율만 추가 징수
소 강 당	1회 (2시간)	35,000원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현	수	정	안	비	고
제4조 (운영 관리) 시장은 노인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u>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종교법인 및 비영리단체</u> 등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관리) 시장은 노인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u>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u> 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대상) ① 생략 ② 대강당, 소강당에 한하여는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대상) ① 생략 ② 대강당, 소강당에 한하여는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 징수 및 면제)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회관 시설의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제11조 (사용료) ①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타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최소한의 실비 범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